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38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김태선 · 이용우 · 윤후덕
허성무 · 이병진 · 김주영
윤종균 · 박 정 · 허 영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퇴직금 일시지급 부담이 크고, 금융·행정 역량도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단계적 적용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4호).

법률 제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30명”을 “100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사업장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사업장은 “100명”을 “50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u>30명</u>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4. ----- ----- <u>100명</u> ----- ----- ----- ----- ----- ----- ----- -----.
15. · 16. (생 략)	15. · 16. (현행과 같음)